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행안부 「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」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 관련 위원회 통합을 위한 법률안의 국회 의결에 대비
- 나. 에너지전문위원회 구성을 현재의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직제에 맞게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도모

3. 주요내용

- 가. 에너지전문위원회 구성 중 “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”와 “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”를 “자원산업전문위원회”로 통합하고, “전력정책전문위원회” 및 “신·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”를 각각 신설하여 운영 (안제4조제1항)
- 1) 위원회 통합 법률안 개정시 현행 “전력정책심의회” 및 “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”가 폐지되고 동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, 에너지위원회 안건의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위해 해당 분야의 에너지전문위원회를 신설
- 2)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“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”와 “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”를 통합하여, 위원회 운영의 집중도 제고

나. 에너지전문위원회 소관 개정 (안제4조제2항~제10항)

전문위원회 신설 및 통합 등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별 소관을 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5. 26.~2023. 7. 7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 (규제없음)

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자원산업전문위원회

5. 전력정책전문위원회

7. 신·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성하고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및 비상”을 “비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성하고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”를 “자원산업전문위원회”로, “구성하고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에너지개발”을 “에너지개발 및 에너지산업”으로, “지원 및”을 “지원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에너지개발 관련”을 “에너지개발 및 에너지산업 관련 품질관리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에너지산업 관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

10.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

제4조제4항제11호(중전의 제9호) 중 “에너지개발과”를 “에너지개발 및 에너지산업과”로, “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”를 “자원산업전문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성하고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”를 “전력정책전문위원회”로, “구성하고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호 중 “석유·가스·전력·석탄 산업과”를 “전력산업 발전에”로, “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”를 “전력정책전문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성하고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전력수급기본계획
2.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
3.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

⑧ 신·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·연구한다.

1. 신·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

2.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
 3. 신·재생에너지 이용·보급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신·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4조제11항(중전의 제10항) 본문 중 “제9항”을 “제10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3항(중전의 제12항) 중 “제11항”을 “제1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조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</u>	3. <u>자원산업전문위원회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<u>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</u>	5. <u>전력정책전문위원회</u>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<u>신 ·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</u>
②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하고</u> ,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 · 연구한다.	② ----- ----- <u>성별을 고</u> <u>려하여 구성하고</u>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「 <u>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</u> 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<u>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· 변경 및 비상</u> 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	3. <u>비상</u> ----- ----- ----- -----
4. ~ 14. (생 략)	4. ~ 14. (현행과 같음)
③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	③ -----

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·연구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신·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

6. (생략)

④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·연구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에너지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

6. (생략)

7. 에너지개발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

8. (생략)

<신설>

----- 성별
을 고려하여 구성하고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5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④ 자원산업전문위원회-----
----- 성별을 고
려하여 구성하고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에너지개발 및 에너지산업 -

지원과 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7. 에너지개발 및 에너지산업
관련 품질관리와 -----

8. (현행과 같음)

9. 에너지산업 관련 경쟁력 강

<신 설>

9. 그 밖에 에너지개발과 관련 된 사항으로서 에너지개발전 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⑤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는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전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전을 조사·연구한다.

1. ~ 7. (생 략)

⑥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는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전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전을 조사·연구한다.

1. 석유·가스·전력·석탄 산 업 관련 경쟁력 강화 및 구조 조정에 관한 사항

2. 석유·가스·전력·석탄 관 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
3. 석유·가스·전력·석탄의

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

10.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위 기 대응에 관한 사항

11. ----- 에너지개발 및 에너 지산업과 ---- 자원산업전문 위원회-----

⑤ -----
----- 성별을 고 려하여 구성하고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⑥ 전력정책전문위원회-----
----- 성별을 고 려하여 구성하고-----

-----.

1. 전력수급기본계획

2.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

3.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

<u>안정적 확보 및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</u> 4. <u>석유·가스·전력·석탄의 가격제도, 유통, 판매, 비축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</u> 5. <u>삭 제</u> 6. <u>석유·가스·전력·석탄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</u> 7. <u>석유·가스·전력·석탄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</u> 8. <u>석유·가스·전력·석탄 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</u> 9. 그 밖에 <u>석유·가스·전력·석탄 산업과 관련된 사항</u>으로서 <u>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의</u>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<u>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</u>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하고</u>,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전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전을 조사·연구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 설></u>	<u>행계획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4. ----- <u>전력산업 발전에</u> ----- ----- -- <u>전력정책전문위원회</u>----- ----- ⑦ ----- ----- <u>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⑧ <u>신·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</u>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<u>성별</u>
--	---

⑧ · ⑨ (생략)

⑩ 제9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⑪ (생략)

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

을 고려하여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·연구한다.

1. 신·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

2.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

3. 신·재생에너지 이용·보급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신·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⑨ · ⑩ (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)

⑪ 제10항-----

-----.

-----.

⑫ (현행 제11항과 같음)

⑬ ----- 제12항-----

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123